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7가단74697 보험금
원 고 유00 (000000-0000000)
대전 중구 00동 326-324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윤

피 고 1.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0000 5가 581
대표이사 이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2. 00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000 2가 150
대표이사 이00
소송대리인 이00

3. 00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00 1가 1
대표이사 신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변 론 종 결 2008. 4. 25.
판 결 선 고 2008. 5. 16.

주 문

1. 피고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1.부터 2008. 5.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 00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7분하여 그 1은 위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원고와 피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 00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10,000,000원, 피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00화재'라고만 한다)는 2004. 8. 27. 오00과 사이에 동인 소유의 대전00노0000 뉴포터 화물차에 관하여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하 자기신체사고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인 오00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를 포함한다.

② 보험기간 : 2004. 9. 26.부터 2005. 9. 26.까지.

③ 보험가입금액 : 3,000만 원.

④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약관상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에 따라,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보상한다(약관상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인 경우 장애등급 8급은 900만 원, 장애등급 14급인 경우 120만 원을 각 한도로 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된다).

나. 피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00생명'이라고만 한다)는 1997. 10. 17. 원고와 사이에 평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특약을 포함하는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 : 원고.

② 보험기간 : 1997. 10. 17.부터 2017. 10. 17.까지.

③ 보험가입금액 : 1,000만 원.

④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여기서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를 의미한다}로 인하여 약관상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00% 내지 50%를 보상한다(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기는 경우 제5급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상하게 된다).

다. 피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00생명'이라고만 한다)는 1999. 3. 18. 원고와 사이에 장해급여금 특약을 포함하는 직장인마스터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 : 원고.

② 보험기간 : 1999. 3. 18.부터 2009. 3. 18.까지.

③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재해{여기서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를 의미한다}를 직접원인으로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상 장해등급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보상한다(중도의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제5급에 해당하고, 이 경우 600만 원을 보상하게 된

다).

라. 원고는 2005. 5. 18. 오후 00의 승낙을 받고 위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읍 옥각리 소재 왼쪽으로 굽은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방향으로 운행 중 도로를 이탈하여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감시카메라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요추염좌, 경추염좌, 좌견관절 타박상 및 좌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요추염좌 등 상해 이외에도 제4-5요추 재발성 추간판탈출증과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착증의 상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8급에, 위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 및 직장인마스터보장보험계약의 각 약관상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므로,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피고 00화재는 후유장해보험금 900만 원을, 피고 00생명1은 평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1,000만 원을, 피고 00생명2은 장해급여금 6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인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삼성생명1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도 아울러 한다.

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함께 보건대,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는 갑 제4호증의 2(소견서)의 기재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뒤에서 보는 점들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3, 을가 제2, 3호증의 각 1, 2, 3, 을나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인 1999.경부터 추간판장애를 겪으며 여러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0. 7. 15.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나래정형외과의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공확장술을 받고, 2004. 8. 10. 대전 중구 산성동 303-54 소재 허리사랑병원에서 또다시 유사한 수술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05. 5. 10. 에도 허리사랑병원에서 척추협착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06. 9. 7. 대전 서구 가수원동 680 소재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제 4-5요추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착증에 대한 치료로 수핵제거술 및 추경나사못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도 8개월여가 지난 2007. 5. 8. 피고 00생명 및 피고 00생명에, 같은 달 10. 피고 00화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입원하였던 대전 동구 성남2동 55-1 소재 한발정형외과의원에서는 당시 원고에게 타박상 및 경·요추부 염좌 이외에는 별 다른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2006. 9. 7.의 수술을 담당하였던 건양대학교병원 의사도 원고의 증상을 퇴행성변화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추간판장애 병력과 수술력, 이 사건 사고 직후 및 수술 당시 원고의 증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으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기왕증으로 보이므로,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피고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

다만, 원고의 피고 00화재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은 요추부 염좌 등의 장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14등급의 후유장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120만 원을 초과하는 실제 손해를 입었음을 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설령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 00생명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5. 18.로부터 2년이 경과된 2007. 12. 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 00생명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피고 00생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00화재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일인 2007. 5. 10.로부터 상법 제658조가 정한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7. 5. 2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1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00생명, 00생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000 _____